

<p>다.</p> <p>먼저 條例案의 主要骨子は 交通誘發負擔金 기준을 現行 1㎡당 350원을 施設規模와 駐車臺數에 따라 350원 또는 500원으로 차등화하고, 負擔金 輕減對象 施設物의 범위는 각종 바닥면적 合計가 3,000㎡이상이고, 附設 駐車場 규모가 10臺 이상인 施設로 정하며, 負擔金 輕減對象 施設物 中에 交通量 義務減縮方案을 시행하는 施設物에 대하여는 交通誘發負擔金을 20% 輕減하고, 追加減縮方案을 施行할 경우 30%를 追加輕減시켜 주고, 本 條例案에 의하여 交通負擔金을 輕減하고자 하는 者는 通勤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고, 交通減縮履行計劃書, 履行實態報告書 및 交通誘發負擔金輕減申請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交通誘發負擔金 輕減決定을 하기 위하여 負擔金輕減調整委員會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本 條例案이 制定된 배경은 오늘날 서울시 交通與件上 1990年度 기준 自動車 臺數는 119萬臺에서 今年 상반기까지 200萬臺로 증가할 것이며, 이 중 乘用車 臺數는 150萬臺로 전체 自動車의 75%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道路率은 1991年度에 18.5%에서 1995년 현재 19.5%로 1%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중에서 車輛通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2m 이상 道路는 11.7%에 불과합니다. 이는 東京 24%, 뉴욕 22%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p> <p>또한 道路率 증가에는 막대한 豫算이 所要되고, 설사 새로운 道路를 만들어도 自動車 增加速度를 따라가지 못해 实效性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交通難解消 方案은 이를 需要管理 側面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乘用車 利用抑制政策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따라서 本 條例案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乘用車 利用抑制方案의 하나로 交通誘發負擔金 輕減措置는 바람직한 政策으로 판단하였습니다.</p>	<p>그러나 市長이 提出한 條例案 中 施行時期를 명기한 附則條項에서 現行 交通誘發負擔金을 부과하는 期間은 都市交通整備促進法施行令 第9條의10에 의거 前年度 8月 1일부터 當該年 7月 30日까지로 하고, 賦課基準은 매년 7月 30日로 規定하고 있으나 條例案 附則에는 5月 1일부터 施行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므로 만약 條例案대로 施行할 경우, 시행상의 賦課期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5月 1日을 8月 1日로 修正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交通委員會에서는 施行時期를 5月 1일부터 한달을 8月 1일부터 하도록 修正하였습니다.</p> <p>아무쪼록 本 條例案을 交通委員會에서 深思熟考하여 修正決議하였으므로 여러 議員님께서 交通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可決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p>이상으로 本 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交通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 交通誘發負擔金輕減等에關한 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關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關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조례안 부칙 “1995년 5월 1일”의 규정을 “1995년 8월 1일”로 한다.</p> <p>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關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p>
---	--

<p>(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8제2항·제9조의15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승용차통행량을 말한다. 3.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영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4.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p>제 3 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영 제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p>제 4 조(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9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제 5 조(부담금의 경감율등) 다음 각호에 의한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하여 100분의 20이상 교통량이 감축되었다고 인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차요금은 주변 공영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승용차함께타기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추가감축방안을 연간 9개월이상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내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경감율을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종사자수 분배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 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 4. 시차출근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9: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 5. 월 20,000원 상당의 대중교통승차권을 종사자의 100분의 75이상에게 구입·지급할 경우 100분의 10 ③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	---

<p>제외한다</p> <p>제 6 조(통근관리인 선임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중 100분의 25 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연 1회이상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p> <p>제 7 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 시행일은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p> <p>②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p> <p>제 8 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부담금의 감감을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 9 조(부담금의 경감결정등) ①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p>	<p>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감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감율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p>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 신고처리등 조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결정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별지 제3호서식>

교 통 량 감 축 이 행 계 획 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의 무 감 축 방 안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주차요금 ○징수방법		○시행방법	○통근용 승용차 : 대 ○함께타기 조편성 : 대 ○통근관리인 선임 : 명
추 가 감 축 방 안	통근버스 운영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승용차 5부제	시행방법 :		
	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시차출근제	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보조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m²)

<별지 제4호서식>

(년 월)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대 총 대 지하주차장 대 입체주차장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의 무 감 축 방 안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10부제		승용차 함께타기
	○주차요금수입 : 원 ○주차장공면율 : % ○1일 이용대수 : 대	○참여차량 : 1일 대	○통근용 승용차 : 대 ○함께타기 조편성 : 대 ○통근관리인 선임 : 명
추 가 감 축 방 안	통근버스 운영	운행대수 : 대, 좌석수 : 개, 1일평균이용인원 명	
	승용차 5부제	시행방법 :	
	승용차 2부제	시행방법 :	
	시차출근제	출근시간 :	
	대중교통이용보조	1인당 월 만원(월간 : 만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 ²)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칭			면적	
	주소			대표자	
	주차장규모	평면주차장 총 대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	대 대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결 정 사 항			신청사항	결정사항	
	경감율		%	%	
	의무감축방안		%	%	
	추 가 감 축 방 안	소계		%	%
		통근버스운영		%	%
		승용차 5부제		%	%
		승용차 2부제		%	%
		시차출근제		%	%
대중교통이용 현금보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 제 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율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귀 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